도급계약서



1. 공 사 명: «공사명»

2. 공사 장소: «공사장소»

3. 착공년월일: «착공일(년월일)»

4. 완공예정년월일: «완공예정일(년월일)»

5. 계약 금액: «계약금액» (부가가치세 별도)

6. 선급금(«선급금(%)»%): «선급금액» (부가가치세 별도)

중도금(«중도금(%)»%): «중도금액» (부가가치세 별도)

잔 금(«잔금(%)»%): «잔금금액» (부가가치세 별도)

7. 대금 지급 방법 : 선급금(«선급금(%)»%), 중도금 («중도금(%)»%), 잔금 («잔금(%)»%)

1) 선급금: «대금지급방법(선급금)»

2) 중도금: «대금지급방법(중도금)»

3) 잔 금: «대금지급방법(잔금)»

(하자보수 관련 보증보험증권 제출시)



수급인은 수급인이 작성한 공사내역 견적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, 도급인의 요청에 의한 상당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도급인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
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붙임서류: 1.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, 2. 공사내역 견적서 1부

«계약일자»

도 급 인

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

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

대표이사 변 정 우

수 급 인

«거래처(을)명»

주소 «거래처(을)주소»

대표이사 «대표자(을)명»



CONFIDENTIAL



도급계약 일반조건

제 1 조[총칙]

도급인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수급인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

제 2 조[정의]

-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1. "도급인"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.
 - 2. "도급"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,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.
 - 3. "수급인"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.
 - 4. "하도급"이라 함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 3 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 - 5. "하수급인"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.
 - 6. "설계서"라 함은 공사시방서, 설계도면(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)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.
 - 7. "물량내역서"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.수량.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.
 - 8. "산출내역서"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.
 - 9. "공사감리원"이라 함은 제 6 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"갑"이 정한 공사감리원을 말한다.

제 3 조[계약문서]



-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,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, 공사계약특수조건,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,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. 이 경우에 공사계약특수조건은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대하여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.
-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를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그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변경 후 상대방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

제 4 조[공사감독원]

- ① "갑"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(이하 '공사감독원'이라 한다)를 선임 및 변경할 수 있다.
 - 1.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
 - 2. 계약이행에 있어서 "을"에 대한 지시.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
 - 3.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
 - 4.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, 준공 및 하자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
 - 5.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"갑"이 위임하는 일
- ② "갑"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 및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"을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5 조[현장대리인의 배치]

- ① "을"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, 그 중 1 인을 현장대리인로 선임한 후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"갑"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"을"을 대리한다.
-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현장대리인이 제 4 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 또는 선임 후 변경된 공사감독원의 지시사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



경우, "갑"은 "을"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 6 조[공사감리]

- ① "을"은 공사감리원으로부터 계약된 공사의 수행에 대하여 지휘·감리를 받아야 하며,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도 검사 또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.
- ② "을"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공사감리원과 "갑"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사감리원과 "갑"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은 공사감리원이 필요로 하여 공사시공에 필요한 상세도, 시공도 및 공작도의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, 시공시에는 공사감리원의 검사·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비용은 "을"이 부담한다.

제 7 조[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산출내역서]

"을"은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설계서(도서, 시방서, 공사내역서,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산출내역서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8 조[공사기간]

-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.
- ② "을"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"을"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, 이 경우 "갑"과 "을"은 공사기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. 단,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일 지연에 대해선 지체상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- ③ 준공일은 "갑"과 "을"이 협의한 준공예정일까지 "을"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"갑"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.



- ④ "을"은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5 일까지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"갑"은 필요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할 수 있다.
 - 1.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
 - 2. 인력, 장비 및 자재 현황
 - 3. 공정 현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
 - 4. 그 외 "갑"이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⑤ "갑"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공정만회대책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"을"에게 지시할 수 있다.

제 9 조[자재의 검사등]

-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"갑"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"을"은 사용전에 "갑"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"을"은 "갑"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"갑"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,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"갑"이 판명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선 "갑"과 "을"이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.
- ④ "을"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"갑"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"을"의 부담으로 한다.
-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한 공사감리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.
-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한 공사감리원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. 다만.



사전에 "갑"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,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.

- ⑦ "을"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"갑"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⑧ "을"이 제 1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"갑"은 공작물의 철거,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. 단, "을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0 조[공사의 진행]

- ① "갑"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"을"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② "을"은 야간 및 휴일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"갑"에게 요구할 수 없다.

제11조[안전관라 및 재해보상]

- ① "을"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"갑"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"을"에게 있고, "을"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산업재해 등 기타 위해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설계상의 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"을"의 응급처치 이후, "갑"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 12 조[응급조치]

- ① "을"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"갑"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"을"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"을"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

-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"을"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"갑"은 일방적으로 "을"의 부담으로 제 3 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부담하며,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제 11 조 2 항의 규정을 따른다.

제 13 조[공사기간의 연장]

- ① "갑"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인 사태 등 "을"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"을"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"갑"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"갑"은 제 1 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.

(NFIDENTIAL M 14 & [PAGE OF SAI)

- ① "갑"은 "을"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"갑"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"을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"을"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단, 이 경우 당해 부적합 공사가 "갑"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"을"이 입증하여야 한다.
- ③ "갑"은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에 관해선 지체없이 "을"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단, 설계서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선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④ "갑"의 동의 없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, 해당 부분은 공사기성에서 제외하며, 그로 인하여 "갑"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"을"은 배상하여야 한다.



제 15 조[불가항력에 의한 손해]

- ① "을"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.홍수.악천후.전쟁.사변.지진.전염병.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"갑"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.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16 조[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]

-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, 누락,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"갑"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,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. 단,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액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3% 이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3%를 초과한 증감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며, 3%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.
 - 1.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2.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.
 - 3.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.
- ③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.

제 17조[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]

제 15 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



조정하며,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.

제 18조 [기성부분금]

도급계약서 갑지 참조.

제 19 조[준공검사]

- ① "을"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"갑"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"을"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. "갑"은 준공검사에 있어서 "을"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"을"은 제 1 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③ 제 1 항 후문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"을"은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"을"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"갑"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⑤ "갑"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"을"에게 공사목적물의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.

제 20조[대금지급]

- ①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서 전문의 대금지급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.
- ② "을"은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"갑"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, 폐기물, 가설물 등을 철거,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, 이러한 사실을 "갑"으로부터 확인받은 뒤 도급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"갑"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③ "갑"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 "갑"의 대금 지급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

④ "갑"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 10%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위 기간은 대가지급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21 조[이행지체]

- ① "을"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 준공시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기일 다음날로부터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"지체상금"이라 한다)을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"갑"의 요청에 의한 사유,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"을"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.

제 22 조[하자담보] HIDENTIAL

- ① "을"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'하자보수보증금'이라 한다)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"을"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"을"이 "갑"으로부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"갑"에게 귀속하며,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"갑"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"을"은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"갑"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"을"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자담보책임기간이



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"을"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23 조[을의 동시이행 항변권]

- ① "갑"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"을"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"갑"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"을"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. 단,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급 지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- ② 제 1 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.

제 24 조[특허권의 사용]

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 3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"을"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세 25 조[하도급의 제한]

- ① "을"이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"갑"의 사전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"을"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, 안전사고 등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하수급인, 하수급인의 대리인,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"갑"은 제 1 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"을"에 대하여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"을"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.

제 26 조[부분사용 및 부가공사]

"갑"은 공사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이 도급공사 범위 외에 속하는 공사를 제 3 자에게 도급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 "을"은 "갑"의 부분사용 및 타도급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

제 27 조[계약의 해제]

- ① "갑"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. "을"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여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,
 - 2.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"을"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소홀히 하여 예정공정대로 진척되지 아니한 경우.
 - 3. 기타 "을"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,
 - 4. "을"이 정부로부터 영업취소,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,
 - 5. "을"이 가압류, 가처분, 압류, 경매, 체납처분,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, 회사 정리, 화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혹은 타회사와 합병된 경우
 - 6. "을" 또는 그 대리인, 기타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"갑"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
- ② 제 1 항의 규정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"을"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"을"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.
 - 2. "갑"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, 정보 및 편의를 "갑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28 조[손해배상]

- ① 제 27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"갑"과 "을"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계약의 해지, 변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

제 29 조[권리의무의 양도]

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고,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30 조[법령의 준수]

"갑"과 "을"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1 조[분쟁의 해결]

-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.
- ② 제 1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.
- ③ "을"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32 조[합의 관할]

제 31 조의 규정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선, 본 계약의 합의 관할을 "갑"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역 법원으로 한다.

제 33 조[특약사항]

- ①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"갑"과 "을"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.
- ② "을"의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시 1 일 기준 계약금 5/1000 의 지연금을 "갑"에게 지급한다.